

관세평가

【문제 1】 다음 거래내용에 기초하여 관세평가 관련 각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 거래내용 1 >

- 국내의 수입자(A)와 미국 수출자(X)가 체결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에는 다음과 같은 가격조정약관(price review clause)을 포함하고 있었다.
- 제5조(가격조정) 동일 역년(calenda year)에 아래 표에 해당하는 수량을 수입할 때마다 수입자(A)의 선택에 따라 표에 정해진 수량할인 또는 무료 물품을 제공한다. 할인은 동일 역년 수입량에 따라 누적할인(cumulative progressive discounts)하고 소급하여 적용한다.

수입수량	수량에 따른 가격 할인	무료 물품 개수
1천개 미만	할인 없음	무료 제공 없음
1천 ~ 5천개	5 %	100
5천 ~ 1만개	10 %	200
1만개 이상	15 %	300

- A는 2022년 5월 2천개의 물품을 수입했고, 수량에 따른 가격 할인을 선택하여 5 % 할인된 인보이스(invoice)를 받았고, 수입신고를 했다.
- A는 2022년 9월 4천개의 물품을 수입했고, 수량에 따른 가격 할인을 선택하여 9월에 수입한 것은 10 % 할인에 더하여 5월 수입한 2천개에 대하여 5 % 할인이 추가된 인보이스를 받았다.

< 거래내용 2 >

- A는 2022년 5월 2천개, 9월에 4천개를 수입하였으나, 가격 할인을 받지 않았고, 12월 5천개의 물품을 추가로 수입하고 무료 물품을 선택하여, 2023년 1월 300개의 무료물품을 받았다.

물음 1) 위 <거래내용 1>에서 5월에 수입한 2천개 물품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 (1) 5월 거래에서 5 % 할인된 물품의 관세평가 방안을 쓰시오.
- (2) 9월 거래에서 추가 할인 받은 것을 신용채권(Credits)으로 처리할 경우 관세평가 방안을 쓰시오.

물음 2) 위 <거래내용 1>에서 9월에 수입한 4천개 물품의 관세평가 방안을 쓰시오.
(5점)

물음 3) 위 <거래내용 2>에서 2023년 1월 무료로 받은 300개의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방안을 쓰시오. (10점)

【문제 2】 다음 거래내용에 기초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 여행자 휴대품 등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여행자 A 휴대품(면세한도 초과물품)의 수입물품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개별소비세 기준 가격이 없고, 평가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평가 조건 >

- * 동종·동질상품의 국내도매가격: 10,000,000원
- * 교육세율: 10 %
- * 관세율(국내도매가격 형성시 실제 적용된 관세율): 20 %
- * 개별소비세율: 30 %
- * 농어촌특별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물음 1)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과세가격과 시가역산율 계산공식을 기술하시오. (10점)

물음 2)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과세가격과 시가역산율 산출과정을 기술하시오. (과세
가격은 소수점 이하는 버림, 시가역산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함) (10점)

【문제 3】 다음 거래내용에 기초하여 관세평가 관련 각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 거래내용 1 >

- 국내 수입업자(J)는 2022년 1월 중국 산둥성 수출업자(Y)로부터 양파를 수입하면서, 대금 지급은 취소불능신용장으로 하기로 했다.
- Y는 J와 최초 거래이고 거래금액이 많으므로 중국 소재 은행에게 신용장 확인(confirm)을 한다고 통보했다.
- Y가 J에게 보낸 인보이스에는 확인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 J는 양파를 톤당 USD 800에 수입신고를 했다.
- 세관에서는 J의 과세가격을 심사한 후 저가 신고로 판단하고, 평균 수입신고 가격과 차이가 나는 가격에 해당하는 관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J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J가 일부 승소하여 최종 과세가격은 톤당 USD 890이 되었다.

< 거래내용 2 >

- 국내 수입업자(I)는 2022년 4월 중국 수출자(X)로부터 양파 100톤을 1년 동안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차 수입 양파 10톤을 톤당 USD 500으로 잠정수입 신고하였다.
- I는 1년 동안의 양파수입과 관련하여 포괄예정보험 USD 1,000에 가입하고, 1차 양파를 수입할 때 보험료 USD 1,000으로 수입신고하였다.
- 컨테이너에 의한 문전배달형태(Door to Door)의 운임명세서에는 중국 내륙운송 비용 USD 50, 해상운임 USD 200, 컨테이너 임차료 USD 50, 수입항에서 하역비 USD 50, 수입항 도착이후 운송료 USD 50이 포함되어 있었다.
- 2022년 4월 중국 양파의 평균 수입가격은 톤당 USD 1,000(CIF조건)이며, X는 2022년 7월 국내 다른 수입자에게 양파를 톤당 USD 950(FOB조건)에 수출했다.
- 세관에서 I의 수입신고 내역을 심사한 후 평균 수입가격과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 I는 사전 장기·대량구매 계약을 통해 가격할인을 받았고, 양파 재배환경이 좋지 않아 품질이 좋지 않고 가격이 저렴한 내륙 지방으로부터 수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가 제출한 계약서에 가격할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도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 양파 성분 분석결과 당도, 수분 등이 내륙지역이 아닌 산둥성 양파와 99% 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음 1) 위 <거래내용 1>에서 확인수수료(Confirming commissions)의 관세평가 방안을 쓰시오. (10점)

물음 2) 위 <거래내용 2>에서 1차 수입신고할 때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보험료와 운임의 합계(USD)를 구하고, 포괄예정보험 계산 방법을 기술하시오. (주어진 사실 이외의 상황은 고려하지 말 것) (10점)

물음 3) <거래내용 1>의 J의 수입신고 가격을 기초로 하여 <거래내용 2> I의 과세가격을 결정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해상운송비용이 USD 200이고,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을 때 I가 수입한 양과의 과세가격(USD)을 구하시오. (X가 4월과 7월에 수출한 물품의 운송거리는 동일하며, 운임 외 다른 가산요소는 없음) (10점)

【문제 4】 다음 거래내용에 기초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 거래내용 >

- (주)한국상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아부다비상사와 Incoterms[®] 2020 CIF Busan 규칙으로 물품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 (주)아부다비상사는 (주)한국상사를 위하여 부산항까지의 보험을 ICC(C)로 부보하였다.
- (주)한국상사는 중동에서 발생하는 전쟁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s(Cargo))을 별도로 부보하였다.

물음 1) 위 거래에 적용될 과세가격 결정 원칙을 설명하시오. (6점)

물음 2)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주)아부다비상사가 부보한 보험료와 (주)한국상사가 별도로 부보한 전쟁보험료의 관세평가 방안과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4점)